

의안번호	제 716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1년 5월 24일

#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716
----------	-----

제출연월일 : 2021년 5월 24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 이유

-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보건 증진 및 향상에 기여

## 2. 주요 내용

- 적용대상(안 제3조) 다음 각 호 중 충청북도와 고용 및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임
  1. 도 및 도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도 및 도 산하기관, 자회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3. 도 및 도 산하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해당 사업을 다시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소속된 노동자(다중위탁)
- 도지사의 책무(안 제5조)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일하는 시민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실행계획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함
- 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안 제7조) 도지사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함

- 노동안전조사관제(안 제8조) 도지사는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조사관을 둠
-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 위원회 구성(안 제10조)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과 노동조합 및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설치(안 제12조) 도지사는 도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을 도모하고 노사 참여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과 고용형태에 일의 미래가 불려올 노동안전보건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함으로써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보건을 증진·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노동안전보건은 기술 발전, 기후변화, 산업구조, 다양한 고용형태와 관련된 괴롭힘, 스트레스, 디지털 건강 등 변화하는 산업재해 영역의 사회심리학적 위험요인을 포함한다.
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충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고용 및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다.

1. 도 및 도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도 및 도 산하 기관, 자회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3. 도 및 도 산하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해당 사업을 다시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소속된 노동자(다중위탁)

**제4조(지원대상)** 충청북도가 직접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 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
2. 화학·식품 제조업에 6개월 이하로 파견되는 단시간 및 단기계약 노동자
3.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각종 배달종사자, 대리운전, 화물트럭기사 등)
4. 토목 및 건설 현장
5. 상·하수 관리, 청소, 경비 등 시설관리 노동자
6. 외국인 이주 노동자
7. 특성화고 실습 및 실습 노동자
8. 그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으로 매년 충청북도가 정하는 노동자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일하는 시민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실행계획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노동안전보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사업, 안전장비 및 그 밖의 우대·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노동부의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요청을 받는 경우는 해당 사업장의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

**제7조(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②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2.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3. 충청북도형 분야별 노동안전보건대책 마련(작업중지권 등)
  4. 충청북도형 사업장 위험·유해 도급금지 등 관련 규정 마련
  5. 충청북도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6.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 컨설팅, 시정조치
  7.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구성 및 운영
  8.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조사를 위한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
  10.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 및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기초로 ‘충청북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실행계획에는 산재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제4조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충청북도 노동안전지표를 반영하여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안전조사관제)** ① 도지사는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조사관을 둔다.

- ② 노동안전조사관의 자격 및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③ 노동안전조사관은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조치가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 ④ 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주의 협조)**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노동안전조사관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노동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지원, 출입허용, 활동시간 보장 등 협력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이행 및 활동시간 보장

7. 하청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보장

8.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의 협력

**제10조(사고예방 및 사고조사 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과 노동조합 및 노동계가 참여 하는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장의 인허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지역 주민이 유해물질 배출, 소음, 비산먼지, 오폐수, 공사장 주변 교통사고, 부실 시공 등과 관련하여 노동안전보건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예방과 피해 대책을 위해 노동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도민의 요구가 있거나,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고예방 및 사고 조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사에 따르는 권고안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조사 보고서(권고안 포함) 및 이행과정을 공식적인 공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자료요청에 대해 성실히 공개하여 사고 조사가 사회화되고 동일 재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충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충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노동자, 노동조합, 산재예방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을 추천받아 위촉하며, 자격, 임기 및 임무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도지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등 활동 보장을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④ 도지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며,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안전조사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3장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도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을 도모하고 노사 참여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노동현장의 노동안전 및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식견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등
2.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제1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당 안전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결격사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방침)**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침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 제15조(조례의 제정과 폐지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정부의 책무)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 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견서

- 「지방자치법」 제11조제5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국가사무)는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국의 사업장에 대하여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마련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의 주체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또는 사무는 기본적으로 조례의 제정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국가사무에 해당되며, 현재까지는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21 11. 19.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에 관한 자체계획 수립, 교육·홍보 등 일반적·포괄적 사항에 한정된 것이며, 사업주에게 노동안전조사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위임내용을 감안하여 법령에 위임이 없는 사업장 출입 점검 등이 포함된 내용은 제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교육홍보 등의 사전 예방적 내용에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모쪼록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